

의안번호	2219425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9. 22.
추 계 번호	26G3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 경제 부문 조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경제, 금융 부문 지원 등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조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5년 연장할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7년 14억원 등 2027년에서 2038년까지 12년간 총 235억원(연평균 20억원) 감소
-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 및 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적자료 부재 등으로 향후 공제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본 추계에서 제외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8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8	누적	연평균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34조)		-0.1	-0.1	-0.1	-0.1	0.4	0	0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44조)		-0.02	-0.02	-0.02	-0.02	0.08	0	0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투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46조의8)	-14	-14	-14	-14	-14		-70	-1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104조의12)		-33	-33	-33	-33	-33	-165	-33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104조의15)		-0.05	-0.05	-0.05	-0.05	-0.05	-0.25	-0.05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5년 연장(안 제121조의26)		-0.04	-0.04	-0.04	-0.04	0.16	0	0

주: 1.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2	안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3	안 제44조(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 등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하고,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4	안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벤처기업 등의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액에 사용된 금액을 재투자자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5	안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순 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의 손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6	안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손금 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7	안 제104조의15(해외 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자원개발 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특례내용: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3% 상당금액을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8	안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특례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 및 투자로 충당한 내국법인 - 특례내용: 양도차익에 대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2	안 제34조의2(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및 과세이연 규모에 대한 기초자료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3	안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4	안 제46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무자에 대한 과세특례)	○	
5	안 제52조(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 해당 특례는 2017년 시행 이후 실적이 부채함에 따라 향후 발생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
6	안 제104조의12(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7	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8	안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7년 귀속소득에 대한 신고시점을 바탕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사업소득) 세수효과는 2028년에, 소득세(양도소득) 세수효과는 2027년에 발생한다고 가정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등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이연 및 향후 분할 익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2027~2031년간 양도차익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2028~2038년간 발생
 - 동 특례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한 다음연도(t+1)에 익금으로 산입되지 않은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4년거치 이후 3년간(t+5~t+7) 분할 익금산입됨에 따라 세수 증가효과 발생
 - ※ 단, 초기에 세수 감소효과와 향후 세수 증가효과가 상쇄되어 총액은 0원
 - 2027년 신규 양도차익 발생액은 최근의 연평균 실적 등을 활용하여 가정

[표 2] 거치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

귀속분 연도	2028~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감소/거치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2028	감소/거치	거치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2029	감소/거치	거치	거치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2030	감소/거치	거치	거치	거치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2031		감소 /거치	거치	거치	거치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분할 익금산입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 14억원

-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2023~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 33억원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다음의 가정을 적용하여 추계
 - 향후 과세특례 실적은 2025년 실적(0.05억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본 추계에서는 포함하지 않음
 -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는 해당 법인의 자산매각 규모 및 이에 따른 과세이연 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17년 시행 이후 실적이 부재¹⁾하여 향후 적용기한 연장에 세수효과의 합리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3. 상세 추계내역

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34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거치 이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법인은 양도차익에 대하여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

1) 최근 감면실적을 바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세수 감소는 연평균 10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안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개정안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연도별로 세수효과
과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특례실적) 동 제도는 2023년 이후 매년 0.1억원 수준으로 실적이 발생
[표 3]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21~2025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특례실적	0	0	0.1	0.1	0.1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신규 양도차익이 최근 3년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동 제도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7년 신규 양도차익의 현행 및 개정안의 거치기간과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
 - 2027년 양도차익은 최근 3년(2023~2025년)의 연평균 수준인 0.1억원 수준으로 발생
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2027년 양도차익의 신고시점을 가정하여, 2028년에는 양도차익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이후 4년(2028~2031년)간 거치, 2032~2034년간
0.03억원씩 분할 익금산입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
- ※ 이에 따른 세수효과의 총액은 증가효과와 감소효과의 상쇄로 0에 수렴

[표 4]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28~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0.1	0.03	0.03	0.03				
2028	-0.1		0.03	0.03	0.03			
2029	-0.1			0.03	0.03	0.03		
2030	-0.1				0.03	0.03	0.03	
2031		-0.1				0.03	0.03	0.03
세수효과	-0.4	-0.07	0.07	0.1	0.1	0.1	0.07	0.03

(3) 추계결과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향후 법인세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연도별로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감소하다가 2033년부터 2038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8~2038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 연장(안 제34조)	-0.1	-0.1	-0.1	-0.1	-0.07	0.07	0.1
	2035	2036	2037	2038	누적	연평균	
	0.1	0.1	0.07	0.03	0	0	

나.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4조)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회생계획인가 결정 법인이나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장후기업이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고, 금융기관은 면제한 채무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특례실적) 동 제도는 2024년 이후 매년 0.02억원의 실적이 발생

[표 6]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 법인세 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특례실적	0	0	0	0.02	0.02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4년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 향후 기업의 채무면제익이 2024년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동 제도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7년 채무면제익의 현행 및 개정안의 거치기간과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
 - 2027년 채무면제익은 2024년 이후와 동일하게 매년 0.02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정
 - 2027년 이익의 신고시점을 가정하여, 2028년에는 이익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이후 4년(2028~2031년)간 거치, 2032~2034년간 0.006억원씩 분할 익금산입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
- ※ 이에 따른 세수효과의 총액은 증가효과와 감소효과의 상쇄로 0에 수렴

[표 7]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28~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0.02	0.006	0.006	0.006				
2028	-0.02		0.006	0.006	0.006			
2029	-0.02			0.006	0.006	0.006		
2030	-0.02				0.006	0.006	0.006	
2031		-0.02				0.006	0.006	0.006
세수효과	-0.08	-0.013	0.013	0.02	0.02	0.02	0.013	0.006

(3) 추계결과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향후 법인세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연도별로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감소하다가 2033년부터 2038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8~2038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안 제44조)	-0.02	-0.02	-0.02	-0.02	-0.013	0.013	0.02
	2035	2036	2037	2038	누적		연평균
	0.02	0.02	0.013	0.006	0		0

다.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46조의8)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벤처기업 등의 주식 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한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양도대금의 50% 이상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을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실적의 경우, 2017년에서 2021년까지 1억원 이하였으나, 2022년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증가

[표 9]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 실적: 2021~2025년

(단위:억원)

구분	세목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망치)	'22~'25년 연평균
제46조의8	소득세	1	12	15	15	13	14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2022~2025년 연평균 감면실적: 14억원

(3) 추계결과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는 2027년 13.8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70억원(연평균 14억원) 감소

[표 10]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2027~2031년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채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안 제46조의8)	-14	-14	-14	-14	-14	-70	-14

라.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2)

(1) 제도 개요 및 추계방법

- (제도개요)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손금 산입 과세특례
 - 신용회복목적회사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여신 거래에 제한을 받고있는 자에 대한 부실채권의 매입, 금리·만기 등의 재조정 및 고금리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지급보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임
 - 2026년 6월 기준 신용회복목적회사는 새출발기금 주식회사와, 새도약기금 주식회사의 2개사임 (기획재정부고시 제2022-22호, 제2025-43호)
 - 손실보전준비금은 장래의 손실보전에 대비하여 적립한 준비금으로,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해당 준비금을 사업연도의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함
- (추계방법) 신용회복목적회사가 손금으로 계상한 손실보전준비금의 손금 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를 다음의 가정에 따라 추계함
 - 최근 5년간 과세특례 실적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과세특례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최근 3년 과세특례 실적의 연평균: 33억원

[표 11]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 실적 추이: 법인세, 2020~2025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잠정)	연평균 (2023~25)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4조의12)	8	7	18	26	39	34	33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결과

- 신용회복목적회사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5년 연장에 따라 법인세는 2028년 33억원 등 2028~2033년까지 5년간 총 165억원(연평균 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2]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4조의12)	-33	-33	-33	-33	-33	-165	-33

주: 단수조정으로 인해 연도별 금액의 합계와 누적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도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도 제시된 평균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5)

(1)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

- (제도개요) 동 제도는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기업에게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공제율: 3%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공제실적) 동 제도는 2023년 신설된 이후, 2024년에는 공제실적이 없었으며, 2025년 0.05억원의 공제실적이 발생

(2) 추계방법

- 향후 매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공제실적은 2025년 수준(0.05억원)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

(3) 추계결과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8년 0.05억원, 2032년 0.05억원 등 2028년에서 2032년까지 총 0.25억원 (연평균 0.0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3]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및 법인세, 2028~2032년

(단위: 억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안 제104조의15)	-0.05	-0.05	-0.05	-0.05	-0.05	-0.25	-0.05

바.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안 제121조의26)

(1) 제도개요 및 감면실적

- (제도개요)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 자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
 - 동 제도는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
 - 현행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를 상환하는 법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허용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법인에 대해서는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2025.12.23. 일부개정으로 2026년부터 시행)
- 개정안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연도별로 세수효과
의 증가 또는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특례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금융채무상환자금으로 충당한 내국
법인
 - 특례내용: 양도차익에 대한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²⁾ 소재 법인은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양도가 발생한 연도와 이후 3개 또는 5개 사업연도를 포함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감면실적) 최근 5년(2021~2025년)간 특례실적 추이는 다음과 같음

[표 1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실적: 2018~2024년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
특례실적	0.1	0.07	0.04	0	0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추계방법

- 향후 신규 양도차익이 2023년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동 제도의
거치기간 및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세수효과 추계
- 2027년 신규 양도차익의 현행 및 개정안의 거치기간과 분할 익금산입 기간을
반영하여 향후 연도별 세수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계
 - 2027년 신규 양도차익은 2023년과 동일하게 매년 0.04억원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
정하여 추정
 - 2027년 이익의 신고시점을 가정하여, 2028년에는 이익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세수
감소효과가 발생하나, 이후 4년(2028~2031년)간 거치, 2032~2034년간 0.013억원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지역산업위기대응법」 제2
조)으로 현재 전남 여수시(2025.5.1.~2027.4.30.), 충남 서산시·경북 포항시(2025.8.28.~2027.8.27.),
전남 광양시(2025.11.20.~2027.11.19.), 울산광역시 남구·충남 당진시(2026.6.15.~2028.6.14.) 6개 지
역이 지정됨

분할 익금산입에 따른 세수 증가효과가 발생

※ 이에 따른 세수효과의 총액은 증가효과와 감소효과의 상쇄로 0에 수렴

[표 15] 현행 및 개정안의 연도별 세수효과 추정

(단위: 억원)

연도	2028~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27	-0.04	0.013	0.013	0.013				
2028	-0.04		0.013	0.013	0.013			
2029	-0.04			0.013	0.013	0.013		
2030	-0.04				0.013	0.013	0.013	
2031		-0.04				0.013	0.013	0.013
세수효과	-0.16	-0.026	0.026	0.04	0.04	0.04	0.026	0.013

(3) 추계결과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향후 법인세수의 총액에는 변화가 없으나, 연도별로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감소하다가 2033년부터 2038년까지는 증가할 것으로 추계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고려하면, 세수효과는 2028~2038년간 발생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수효과는 2027~2040년간 발생하나, 본 추계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표 16]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및 소득세, 2027~2037년

(단위: 억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 연장 (안 제121조의26)	-0.04	-0.04	-0.04	-0.04	-0.026	0.026	0.04
	2034	2035	2036	2037	누적		연평균
	0.04	0.04	0.026	0.013	0		0

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과세특례 세수효과는 2026년 이후 시행으로 본 추계에서는 미고려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박정환	백경엽
	김주현	
	이유섭	
	신미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정환	02-6788-4835	jhpark83@assembly.go.kr